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서



행정문화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연병호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1. 회부경위

본 개정조례안은 2012년 4월 30일 충청북도지사로부터 제출되어 2012년 5월 3일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었음.

2. 제안이유

- 지방공무원법<법률 제10700호, 2011.5.23> 및 지방공무원 임용령<대통령령 제23093호, 2011.8.22> 개정에 따라 기능10급 계급체계를 일반직과 동일한 9계급 체계로 개편. (시행 : 2012. 5. 24)
- 이에 따른 기능10급 폐지를 위하여 기능직공무원의 정원책정기준을 조정하고자 함.

3. 주요내용

- 기능직공무원 정원책정 기준 조정(별표)
 - 10급 폐지, 9급 비율 상향 조정

구 분	5급	6급	7급	8급	9급	10급
현 재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30%이내	18%이상
조 정	1%이내	7%이내	22%이내	22%이내	48%이상	
증 감	-	-	-	-	18%	△18%

4. 검토의견

금번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5월 23일 개정된 「지방공무원법」 제4조에 따라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개편하기 위한 것으로 부칙에 시행일이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2012년 5월 24일부터 우리도도 지방공무원법에 맞추어 기능직 공무원의 계급을 기능1급부터 기능9급까지로 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임.

현재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에는 기능직공무원의 계급이 기능1급부터 기능10급까지로 되어 있으며, 기능9급은 30%이내, 기능10급은 18%이상으로 되어 있음. 따라서 기능9급과 기능10급을 합하여 기능9급의 정원을 48% 이상으로 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붙임 :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끝.